## 자산운영지침

제정 2016. 1. 1 개정 2017. 2.28 시행 2017. 3.10 개정 2020. 9.24 시행 2020. 9.28 개정 2022. 4.27 시행 2022. 5.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정자산 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자산운영 등에 관한 세부절차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산"이란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3. "기타자산"이란 규정 제2조제1호 자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4. "자산운영"이란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그에 수반되는 기획·집행 등의 행위를 말한다.
- 5. "취득"이란 자산을 건설, 매수,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6. "처분"이란 자산을 매각, 교환, 증여,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

유권을 공사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7. "불용결정"이란 자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과 달리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자산관리자 및 자산관리위원회

- 제4조(자산관리자) ①자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자, 부문관리자, 단위관리자를 둔다.
  - ②총괄관리자는 자산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하위 자산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부문관리자는 광고회관·방송회관·연수원 운영을 담당하는자로 하며, 각 부문관리자는 총괄관리자를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각 단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9.24.>
  - ④단위관리자는 자산의 운영, 관리에 관한 계약, 임대차관리, 시설사용, 시설관리, 연수원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기획, 집행 등의 세부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 ⑤특정업무의 소관 부문관리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둘 이상이 부문

관리자가 협의 또는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관리자가 해당 특정업무의 소관 부문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총괄관리자와 부문관리자의 업무 및 사무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지침, 사무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 제6조(자산관리위원회) ①사장은 자산 운영과 관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7.>
  - ②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자산관리·운영 소관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괄관리자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24.>
  - ③위원장, 3인 이상의 위원, 총괄관리자는 자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전조에 따라 자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위원회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2.4.27.>
  - 1.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자산 불용결정 및 불용자산 처분 등 자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22.4.27.>

나. <삭제 2022.4.27.>

2. 자산 손망실 및 손망실자산의 처리 등 시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가. <삭제 2022.4.27.>
- 나. <삭제 2022.4.27.>
- 다. <삭제 2022.4.27.>
-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다. <개정 2022.4.27.>

#### 제3장 자산의 취득

- 제8조(부동산취득계획서) ①규정 제18조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부동산취득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취득 목적
  - 2. 용도와 필요면적
  - 3. 부동산 소재지
  - 4. 부동산의 표시(토지의 지목과 면적, 건물의 면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
  - 5. 소요예산 및 그 산출근거
  - ②제1항의 부동산취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등기부, 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

- 2. 현황 사진 및 위치도
- 3.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필요한 서류

제9조(사전조사) ①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부동산의 경계 등 부동산 현황에 관한 조사
- 2. 권리관계 등에 관한 조사
- 3. 시설물현황에 대한 점검
- ②제1항 제2호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1. 소유자·점유자에 관한 사항
  - 2. 제한물권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설정여부 및 그 세부 사항
  - 3. 건물의 임대차 현황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4. 제세공과금 체납유무
  - 5.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저촉여부
- ③제1항 제3호에 따른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취득대상 부동산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공부상 기재 등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협의 후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⑤사전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규정 제21조의 매매계약의 예약을 할 수 없다.
- 제10조(취득예정가격과 취득가격의 결정) ①부문관리자는 취득예정가

- 격 산정을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취득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부문관리자는 제1항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취득 대상 부동산의 주변시세 및 시가 등 고려하여 취득예정가격을 결정 한다.
- ③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전항의 취득예정가격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 ④전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득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감정평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사가 경쟁입찰 또는 공매에 참가하는 경우
  - 2. 소유자 등이 계약일(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일) 기준 1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 3. 취득대상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부동산에 대하여 최근 6개월간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감정평가 없이도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12조(부동산 취득계약 등) ①부동산 취득계약은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다.

- ②사전조사 결과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타인의 점유권이 형성된 경우에 이를 해소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매매대금은 계약상의 기한을 준수하여 지급하며, 계약 후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한 경우에는 취득을 제한하는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매대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급지급기일에 계약상대방이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 제2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소유권이전등기) 단위관리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중개업자 등의 이용) 부문관리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 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중개업자 또는 부동산전문운용회사 에게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보험가입) ①부문관리자는 취득한 부동산이 법령 또는 자산의 관리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이하 "특수건물"이라 한다)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②보험금액은 최근 감정평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8>
- ③보험계약의 청약은 책임 개시일 2일전에 청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보험대상물건은 보험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 ④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을 받아 보험료납입영수 증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기타자산취득) 규정 제24조에 따라 기타자산취득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취득 목적물의 내역
  - 2. 취득 목적
  - 3. 용도
  - 4. 목적물에 요구되는 기능이나 품질 등에 관한 사항
  - 5. 소요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불용결정과 처분

제1절 부동산의 처분

- 제17조(부동산처분계획서) ①규정 제51조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부동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부동산목록
  - 2. 부동산의 가액 및 처분예정가격
  - 3. 처분사유
  - 4. 처분방법과 시기
- 제18조(부동산 처분예정가격 결정) ①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
  -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둘이상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 처분하는 경우 :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 ②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 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 ③부문관리자는 경쟁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

- 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9조(수의계약에 의한 부동산 처분 시 가격결정) ①수의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처분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대상 부동산의 개별 여건과 인근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처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이사회의의결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 제20조(서류 등 교부) ①단위관리자는 부동산의 매수인(또는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또는 입주사) 현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단위관리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금 수령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부동산 처분 위탁 등) ①규정 제51조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 리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자산처분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위탁의 목적
  - 2. 위탁 수수료 및 비용
  -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 8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2절 불용결정과 기타자산의 처분

- 제22조(불용결정) ①부문관리자는 규정 제4조의 자산에 대하여 규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불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 한다. <개정 2017.2.28>
  - ② <삭제 2017.2.28>
  - ③자산불용 결정은 서면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 1. 자산명, 자산코드, 규격, 수량, 취득 연월일, 내용연수,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 2. 불용 결정 사유 및 처분방법
    - 3. 자산의 사용 부서 및 현재 상태
    - 4. 다른 목적 및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 <삭제 2017.2.28>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④전항 제5호에 따라 처분방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각, 재생을 위한 해체, 증여, 폐기 등의 방법 중 선택한다.

⑤규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불용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총괄관리자는 방송광고 관련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관련 비영리단체 등에게 불용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증여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17.2.28>]

제23조 삭제 <2017.2.28>

- 제24조(기타자산처분계획) ①규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기타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불용결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자산처분계획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5조(기타자산의 처분예정가격 결정) ①기타자산의 처분예정가격은 유사 품질의 물품 거래 시세에 따라 결정한다.
  - ②수의계약에 따라 기타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6조 [종전 제26조는 제22조 제5항으로 이동]
- 제27조(불용자산의 해체·폐기) ①총괄관리자는 불용자산 중 일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해체하여 활용하고 잔여부분에 한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②총괄관리자는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③불용자산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용자산 해체·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해체·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8조(기타자산 처분 위탁 등) 기타자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5장 계약

#### 제1절 통칙

- 제29조(계약의 원칙) ①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계약은 총괄관리자 가 행한다. <개정 2017.2.28>
  - ②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체결한다.
  - ③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④전항의 경쟁 입찰(지명, 제한경쟁입찰을 포함한다)은 경매의 방법에 의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단,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항본문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신설 2017.2.28>

- ⑤입찰은 자산별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개의 자산을 함께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3조 제3항에서 이동 <2017.2. 28>]
- ⑥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회계규정 제98조에 따른다. <신설 2017.2.28>
- 제30조(청렴계약) ①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7.2.28>
  - ③ 삭제 <2017.2.28>
  - ④ 청렴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20 17.2.28>
- 제31조(부당계약 제한 등) 총괄관리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 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회계규정 제99

조를 따른다. <개정 2017.2.28>

#### 제2절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제33조(경쟁입찰) ① 삭제 <2017.2.28>

- ②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 ③ [종전 제33조 제3항은 제29조 제5항으로 이동 <2017.2.28>]
- ④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제34조(제한경쟁입찰) ①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또한 공사 입찰의 경우 시행령 제2 2조에 따라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②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 고에 그 제한 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 21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로 본문의 입찰 공고 명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③ 삭제 <2017.2.28>
- 제35조(지명경쟁입찰) ①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규정 제12조 제4항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 ③전항의 경우 제37조의 사항을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에 따라 각입찰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 ④ 삭제 <2017.2.28>
- 제36조(입찰공고의 방법·시기) ①입찰공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2항 이외의 입찰공고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은 시행 령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 제35조를 따른다. <개정 2017.2.28>
  - ④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공고사항) ①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 재산의 용도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 입찰·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4. 입찰 참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등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사항
- 9.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 10.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②시행령 제36조제3호·제3의2호, 12호부터 15호까지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임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

- 2. 임대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에 관한 사항
- 3. 임대료 결정방법 및 증감에 관한 사항
- 제38조(예정가격 결정 등) ①총괄관리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은 시행령 제8조·제9조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8>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 2항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③단위관리자는 현장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공고 시에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 제39조(입찰참가) ①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④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 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② 삭제 <2017.2.28>
  - ③ 삭제 <2017.2.28>
  - ④전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 제40조의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야 한다.
  - ②전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1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41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7조 제3항,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8>

- ②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 ③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⑤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며,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제38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2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개 정 2017.2.28>
  - 1.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시행령 제21조의 제한경쟁입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시행규칙 제44조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단위관리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한다.

- ③총괄관리자는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④제1항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개찰은 입찰 공고에 공고된 절차, 방법, 일시에 따라 실시한다.
  - ②제1항의 개찰 시에는 입회감사역이나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③총괄관리자는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 제44조(낙찰자 결정) ①낙찰자는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 42조·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 ②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시행령 제4

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전조에도 불구하고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단위관리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 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4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
  -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④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제47조(새로운 입찰) ①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8조(입찰보증금의 반환) ①낙찰자 이외의 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은 낙찰자결정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시 등록한 예금계좌로 반환하며, 현금으로 납부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9조(계약체결 등) ①총괄관리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서 계약체결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양식의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계약의 목적과 목적물의 표시
  - 2. 계약금액과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3. 계약의 이행 기간
  - 4. 계약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 5.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 6. 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 7. 취득·처분 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
- ③계약서는 사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사장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회계규정 제8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0조(계약보증금) ①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 제96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8>
  - ②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시행령 제37조 3항 각 호

- 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7.2.28>
- ④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⑤공사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 제51조(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 설계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2조(감독) ①부문관리자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단위관리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 내용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부문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검사) ①부문관리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또는 검수)하거나 단위관리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또는 검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사 및 입고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규정 제103조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회계규정 제94조에 준해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시행령 제56조의2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 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4조(대가의 지급) ①단위관리자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공사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또는 검수)를 완료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다.

- ②대가는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검사 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완료 후 5영업일내)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과의 합의로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단위관리자는 대금 청구의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의지급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제2항·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간 대출 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5조(대가의 수납) ①단위관리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 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또는 동시이행관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단위관리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

- 상, 이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단위관리자는 계약상대방이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제(또는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수납하여야한다.
- ④전항의 경우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제56조(명의변경) ①계약상대방은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에 한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포괄승계인은 포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기한(기간을 포함한다)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명의 변경한 경우에도 그 기한은 잔여기한으로 한다.

## 제3절 수의계약

제57조(수의계약) ①단위관리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규정 제12조 제4항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7.2.28>
- ③단위관리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97조 단서의 경우,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7.2.28.> <개정 2020.9.24.>
- ④ 삭제 <2017.2.28>

제58조 삭제 <2017.2.28>

제59조 삭제 <2017.2.28>

제60조 삭제 <2017.2.28>

제61조 삭제 <2017.2.28>

- 제62조(수의계약의 제한)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 1.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된 경우 단,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계약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경우

제63조 삭제 <2017.2.28>

제64조(준용규정)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 38조,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 제6장 자산의 취득 후 관리와 기록관리

### 제1절 자산의 취득 후 관리

제65조(자산변경) 총괄괄리자는 자산을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6조 삭제 <2017.2.28>

제67조(손망실된 자산의 보고) 규정 제17조에 따라 손망실된 자산에 대하여 보고는 서면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손망실된 자산 명세 내용
- 2. 손망실된 사실이 발생한 시기 및 사유
- 3. 손망실된 자산의 장부가격(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잔존가액)
- 4. 손망실 원인 및 변상책임. 단, 이 경우는 본래의 용도 상실에 의한 손해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수량의 감소 또는 물체가 멸실된 상태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 5. 손망실된 자산의 처리계획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8조(원상복구 등) ①총괄관리자는 손망실된 자산에 귀책사유가 있

는 임차인 등에게 서면을 통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절 기록관리

제69조(기록) ①규정 제53조의 기록은 다음과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부동산 자산대장
- 2. 기타자산대장
- 3. 임대차 자산대장
- 4. 감가상각대장
- 5. 그 밖에 등기부, 대장 등 공적장부와 건물 도면 등 자산 정보에 관한 서류 등
- ②제1항의 대장의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산운영을 담당하는 부문관리자가 진다. 다만, 제1항 제3호·제4호의 대장은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부문관리자가 관리책임을 진다.
- ③전2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 운영을 담당하는 부문관리자는 연수 원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70조(기록관리) ①대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관리자가 기록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②단위관리자는 자산의 취득·변경·처분 등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생순서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부문관리자는 연 1회 기록 관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 ④부문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누락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관리자로 하여금 즉시 처리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 제71조(감가상각) ①단위관리자는 매년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상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가상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 ③감가상각방법, 자산별 내용연수 등 세부사항은 「회계처리기준」 에 따른다.

## 제7장 보칙

제72조 삭제 <2017.2.28>

## 부 칙

-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지침의 폐지) 방송회관 관리운영지침, 한국광고문화회관 관리운영지침, 연수원 회원제 운영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 부 칙 <2017.2.28>

이 지침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9.24.>

이 지침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4.27.>

이 지침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시설물 점검표

# o 준공도서 check list

구 분	세부 내용	보유유무	비고
	건축도면		
	층별 LAY OUT 도면		
	구조도면		
1. 준공도면	각 종 설비 도면		
	전기관련 도면		
	소방관련 도면		
	기타 도면 (통신, 조경 등)		
	건축도면		
	층별 LAY OUT 도면		
	구조도면		
2.인테리어도면	각 종 설비 도면		
	전기관련 도면		
	소방관련 도면		
	기타 도면 (통신, 조경 등)		
	구조계산서		
3.준공보고서	지질조사 보고서		
	각 종 설비 부하 계산서		
4 <u> </u>	구조계산서		
4.증축보고서	지질조사 보고서		
	각 종 설비 부하 계산서		
5. 운영관련 자료	각 종 설비의 운전/점검일지, 점검카드		
	년/월별, 기기별,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연도별 수선공사 내역	
	정화조 수질관리 현황	
	승강기 정기검사 및 보수내역	
	전력 피크치 관리 데이터	
	재산세(건물)	
	재산세(토지)	
C 111 _1	종합부동산세	
6.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도로 점용료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7.진단보고서	소방안전점검 보고서	
7.센턴모고시	수변전 설비 정기검사 자료	
	정기검사 결과 (소방, 전기, 승강기 등)	
	대수선 현황표	
	용도변경 현황	
8.집합건축물대장	대수선 공사 도면, 허가서류	
	주요 임차인 공사도면	
	임대차 계약서	

※ 상기 도면 등 중 관리/운영상에 필요한 최소도면의 보유여부의 확인을 요함

# ㅇ 시설물 check list

7 14	세부	건 긴 의 D		וון ד		
구분	사항	점검항목	양호	미흡	불량	비고
	OJEH	외벽, 벽체, 바닥 시공 상태				
	외벽	외벽,유리시공 및 코킹상태				
	내부	천장재 마감공사 상태 / 벽체 도색 상태				
	비상계단	계단, 바닥, 천정도색 및 난간상태				
건축	주차장	주차장바닥도장 / 벽면, 천정누구 및 도색상태				
	화장실	도어, 세면대, 벽체, 바닥 타일 상태				
	출입문	출입문 개폐상태 (방화문, 강화도어 등)				
	방수	옥상,외곽우 / 오수배관 및 바닥구매상태				
		외부와 연계되는 취약지구의 방수작업의 적절성				

¬ н	세부	키 키 리 디	;	n) =		
구분	세부 사항	점검항목	양호	미흡	불량	비고
		각종 계정기 정격 셋팅 여부				
		각종 계정기 동작시 차단기 동작 유무				
	수변전 설비	발전기 전원 자동절체 (ATS) 정상 유무				
	E 1	부하별 간선 및 NFB등 차단기 용량 적정여부				
		변전실내 비상조명 존재여부				
	발전기	배터리의 상태 (셀, 정격전압, 사용년한)				
전기		ACB동작상태				
		적정배선의시공및노후화상태				
	설비	케이블의차폐층의접지여부				
		부하상태의 불평형 여부				
		개폐시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의 설치 유무				
		전선용량의 정격시공 여부				

	MCC 판넬	부하절연저항상태		
		MCCB 용량의 정격 시공 여부		
		부하별 차단기의 적정용량 설치 여부		
	조명 설비	중앙관제시스템 적용 유무		
		적정조도의 유지 여부		
		층별/ 섹터별 분리 ON/OFF 기능		

	계ㅂ		;			
구분	세부 사항	점검항목	양호	미흡	불량	비고
	펌프설비	베어링소음, 입.토출구 압력, 회전부 누수여부				
	정압기	전.후단압력상태,분해점검시기,통기관상태				
기계	설비	이상압력통보기,가스배관상태				
설비	냉난방	고,저압상태, 배관 보온, 드레인 배관, 가동전류				
사항	설비	상태				
	위생설비	수압, 소변기센서, 연결부 누수여부, 바닥배수구 통수 및 구매				
	휀설비	주기적인 구리스 주입여부, 캔버스 연결 상태, 벨트장력, 소음여부				

			,			
구분	세부사항	점검항목	양호	미흡	불량	비고
	소화전	표시램프, 호스 및 부속, 적정 압력 여부				
2 11]	알람밸브	탬퍼스위치작동여부, 1차、2차압력상태, 밸브부식				
소방 사항	유도등	표시방향, 정상작동여부, 비상전원, 배터리상태				
	S/P설비	배관누수, 압력, S/W상태, 화재연동여부				
	방송설비	엠프의 적정 출력, 각 실의 회로분리 여부				

# 불용자산 해체·폐기조서

1	불용결정 문서번호													
2	장 소													
3	일 자													
	집 행 자	④ 직위(직급			글)			⑤성명						
	입 회 자	6	직	위(직급	글)				⑦성명				인	
8	자산분 류 번 호	9	품	명	10	품	목	11)	단 위	12	수	량	① 급	핵
14)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15)	⑤ 해체할 때의 활용 가능 부품명세													
16	16 그 밖의 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7.2.28>

# (별지 제4호 서식)

입 찰 서									
입찰회차		년 회차	□ 매각	임대					
입찰 물건									
입찰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급		원(₩	)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100)	급		원(₩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 (전화번	_ত :	)					
<ul> <li>(대리인 입찰시)</li> <li>위 대리인 성 명 :</li> <li>주민등록번호 :</li> <li>주 소 :</li> </ul> <li>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광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화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공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전흥중사 귀한국항송장고전흥중 기원 기원</li>	र्ठ	(인) (전화번	호 :	)					
※ 대리인 입찰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